

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

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-8-5-3. (3) ⑧의 ㉠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,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(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)와 영구임대주택
건설용지(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) 및 임대 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
주택건설용지(행복주택을 포함한다)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
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.

제 2 장 중 “감리전문회사”를 “건설기술용역업자”로 한다.

7-2-1. 중 “건설기술 관리법령에 적합한 감리전문회사”를 “건설기술 진흥법
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용역업자”로 하고, “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”를 “감리”
로 한다.

7-2-2. 중 “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”을 “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기술자”로
하고, “건설기술 관리법령”을 “건설기술 진흥법령”으로 한다.

7-2-3. 중 “감리업무수행지침서”를 “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 같다)를 공동주택용지(공동주택을 포함한다. 이하 ⑧에서 같다)의 25퍼센트 이상으로 계획. 이 경우,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(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)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(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)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.

㉔ 수도권·광역시 지역에서 ㉓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와 기타 지역의 경우 :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0퍼센트 이상 계획

(4) (생략)

제 2 장 감리전문회사의 선정

7-2-1.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요청 시 건설기술 관리법령에 적합한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,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도록 하여야 한다.

----- 이 경우,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(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)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(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) 및 임대 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(행복주택을 포함한다)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.

㉔ (현행과 같음)

(4) (현행과 같음)

제 2 장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

7-2-1.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요청 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여,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도록 하여야 한다.

7-2-2. 시·도지사는 시행자가 선정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에 대하여 건설기술 관리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7-2-3. 감리업무는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따라 시행한다.

7-2-2. 시·도지사는 시행자가 선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7-2-3. -----
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를-----
